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6호로 2023년 5월 26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절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조, 제50조~제5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절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와 안 제7에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및 재정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지난해 8월 1)한국ITS학회 논문지에 실린 '서울시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마을버스 적자업체 수는 전체 139개 업체 중 59개(42%)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은 112개 (80%)로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처럼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한국ITS학회: ITS(지능형 교통 체계)관련 학제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발전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며, 정부정책 및 기술제안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며 객관적 견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설립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 교통 체계: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참고 자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 8 (생략)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 8 (생략)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⑨ (생략)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나 (생략)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생략)

2. (생략)